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853호 2011. 10. 17.(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73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2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2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 20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82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검정지침 폐지지침 — 25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 고시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60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 29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0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2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20호 계약이행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 3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30호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 3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1143호 공시 송달 공고 ----- 35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징계양정”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 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중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을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으로 하고,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을 “금품·향응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 외의 본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의 각 호 외의 본문 중 “①구청장은”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동일사건에”를 “같은 사건에”로 하고,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를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으로 하며,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를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어느하나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징계사건”을 각각 “징계등 사건”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징계의결서”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情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 (제 2 조 관 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유형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제7조 관련)

징계 사유		징계 기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능동)		○				
	6) 300만원 이상(수동·능동)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능동)		○				
	4) 100만원 이상(수동·능동)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수동)	○					

※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

[별표 1의3]

음주운전사건 처리 기준(제7조 관련)

연번	유 형 별	양정기준	비 고
1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이 포함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3개월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	견책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은 경우 또는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감봉 2개월	
5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3개월	
6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회 받은 경우	감봉 3개월	
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3회 받은 경우	정직 이상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정직 이상	
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 2회와 정지처분 1회를 받은 경우	정직 이상	
1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3회 받은 경우 또는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 4회 이상 받은 경우	강등 이상	
11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정직 이상	
12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이상	
1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이상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과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73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을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당지급규정”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를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기재란	①소 속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특정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④직(계)급 (호봉)		
	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			③공무원 구분					
	⑤성명 한 글			⑥주민등록번호					
	한 자			⑦주 소		□□□-□□□			
	⑧전화번호(주택)			⑨근속기간		년 월	⑩정년일		
⑪비위·형벌 사항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 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 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 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소속 기관 기재란	⑫정년구분		<input type="checkbox"/> 연령정년 <input type="checkbox"/> 계급정년	⑬정 년				(세, 년)	
	⑭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계약직 <input type="checkbox"/> 고용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월 (년 월)	⑯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input type="checkbox"/> 비위·형벌 사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비위조사 중 <input type="checkbox"/> 수사진행 중 <input type="checkbox"/> 형사재판 계류 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의결 요구 중 <input type="checkbox"/>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input type="checkbox"/>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 형량 :)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서장 직인(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뒤 쪽)

● 신청서 작성방법 ●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함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하고,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기재함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기재
3. ④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계)급·호봉을 기재함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재 하되,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5. ⑩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6. ⑫ ~ □란은 해당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기재함(□란은 특수경력직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
7.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예정일로부터 정년전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기재하되, 월 단위 이하 잔여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 하지 아니함.
8. 비위·형벌사항 확인은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적으로 파악 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공무원이 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 고 서명 또는 날인함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기·수시)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시명예퇴직 신청자만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

2. 직 급 :

(상당계급)

3.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의 고발대상과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업무 부서의 장이하 “감사 담당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구청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범죄행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금품수수 관련

유 형		금액기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수동	1,000만원 이상
	능동	5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500만원 이상
	능동	300만원 이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300만원 이상
	능동	100만원 이상

나.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다. 횡령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라.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배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서구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구청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 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고발처리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목인에 대한 책임)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행위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목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2호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적발 (고발) 일자	고발 관서	수 사 기 관	수사개시 진행상황	최종 결과
		고발당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검정지침폐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2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검정지침 폐지지침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검정지침은 폐지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지정(변경) 목적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입점제한을 강화하여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전통시장(중앙시장 외 5개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의 범위.

※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 : [별첨1]**

3. 전통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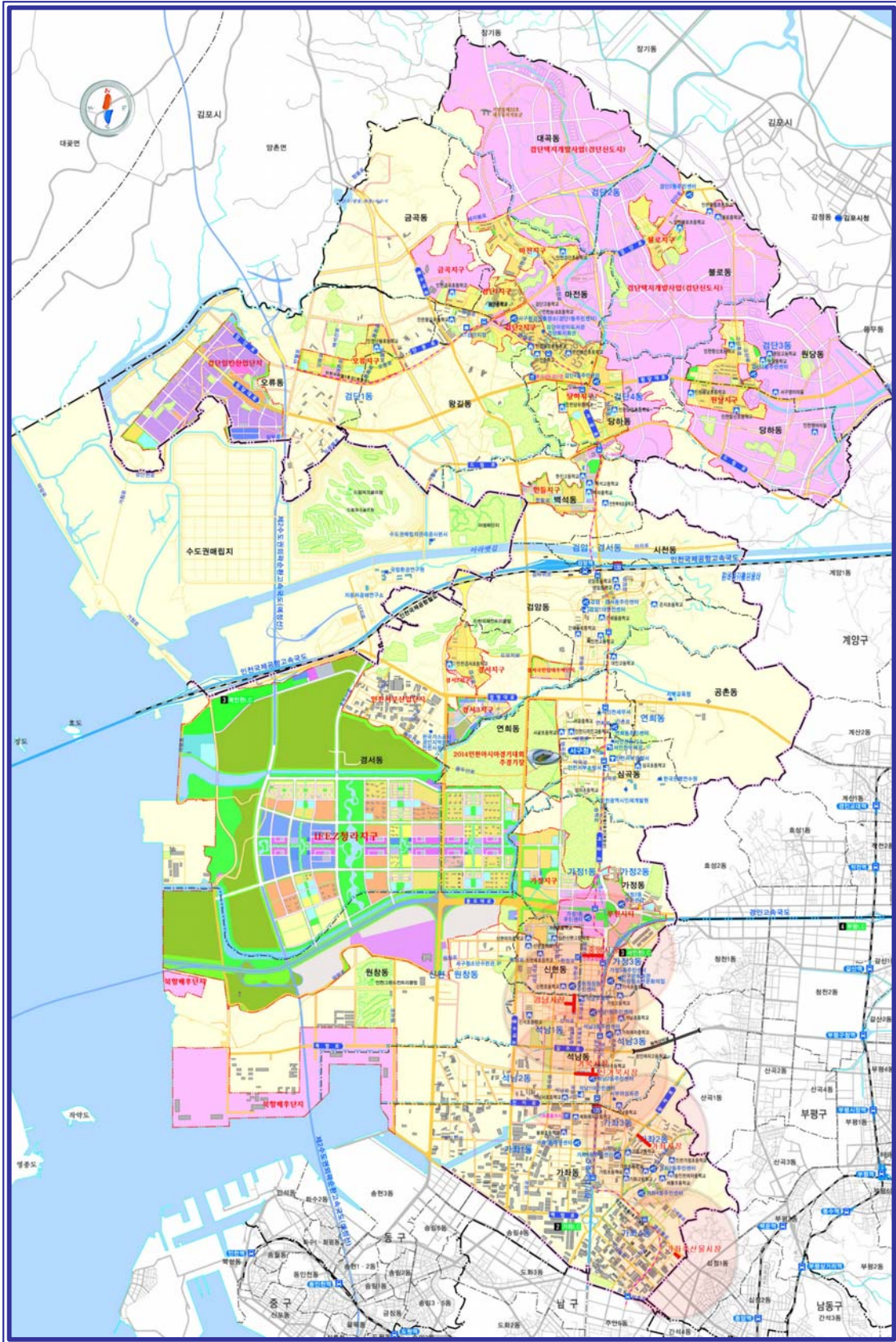
연번	시장명	소재지	면적(m ²)	비고
1	중앙시장	가정동 502번지 일대	8,042.6	인정시장
2	강남시장	석남동 454-19번지 일대	14,985	"
3	거북시장	석남동 548번지 일대	7,126.8	"
4	신거북시장	석남동 540-15번지 일대	10,314	"
5	가좌시장	가좌동 30번지 일대	9,576	"
6	축산물시장	가좌동 477-58번지 일대	35,047.7	"

4. 시행일 및 유효기간

-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 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른다.

[별첨 1]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전통시장 위치도 -



※ 동 위치도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정확한 범위는 실측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6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당하지구 33블럭 1,6로트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공사
2. 사업주체 : 성은건설(주) 노길웅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서구 당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3블럭 1,6로트
 - 나. 대지면적 : 2,260.2m²
 - 다. 연 면 적 : 4,510.16m²
 - 라. 사 업 비 : 5,443,435,000원
 - 마. 사업규모 : 지상5층 1개동 64세대
4. 사업기간 : 2011.05. ~ 2011.12.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변경사항
 - 가. 건축면적, 연면적
 - 나. 세대수
 - 다. 사업비 등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건설과(☎560-45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0.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4동 307-1번지 일원
3. 면적 및 규모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	6~8	국지	194	중3-122	구역계	일반		인고73(97.3.31)	
변경	소로	2	1	8~10	국지	194	중3-122	구역계	일반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1	소로2-1	▶ 일부구간 도로폭원 변경 : B=6~8m → B=8~10m	· 인도설치를 위한 도로 확폭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장고개공원	어린이공원	가좌4동 307	4,667	감) 389	4,278	건고제97호 (82.3.16)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장고개공원	▶ 공원면적 축소 : 축소면적 389m ²	· 도로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1 - 62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인천광역시 하수과(☎440-364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0. 1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원창동 일원
3. 면적 및 규모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조서
 -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신 설	-	하수도 (신현분구)	원창동 196-13	가좌동 598	중봉대로	1.93	4,980	광2-4호선과 중복결정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하수도 (신현분구)	▶ 하수도 신설 : L=1.93km, A=4,980㎡	· 석남·원창동 일원 및 루원시티, AG주경기장, 연희지구 발생오수를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신현분구 하수관거 사업 시행을 위함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120호

계약이행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규정에 의거 계약상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계약이행 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

- 공 사 명 : 장고개공원등 33개소 놀이터 모래교체 및 소독공사
- 업 체 명 : 유미조경
- 대 표 자 : 임 권 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0-10외 1필지 유일B/D 301호

2. 공시송달내용 : 계약이행촉구 및 미이행시 계약해지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3.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4. 제출기관 및 담당부서명: 인천광역시서구재무과

6. 공고기간 : 2011.10.11 ~ 2011.10.24

※ 공고기간내 계약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처분사전통지서 전달 후 계약해지 통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며 이 공시송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인천광역시서구재무과(☎032-560-4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130호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66(2008.12.29.)호로 고시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11. 10.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 고 명 : 검단일반산업단지 환지계획(변경) 인가 공고
2. 사 업 명 :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4.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5. 시 행 면 적 : 2,250,871㎡ (**환지대상: 141,687.2㎡**)
6. 사 업 기 간 : 2006 ~ 2013년
7. 환지계획인가내용 : 게재 생략
8. 환지계획인가내용은 개별통지 하오나 송달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오며,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거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032-260-55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11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시행하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정본을 송달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재결서정본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시장 송 영 길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 춘 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3. 공고 기간 : 2011. 10. 17. ~ 2011. 10. 31.
4. 공고대상자 : “불임” 대상자 명단 참조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3)

※ 불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1. 10. 1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물건지	이름	발송주소	비고
1	불로동 515-5	검단면 불노3리마을회	인천 서구 불노동 652	
2	마전동 540-4, -5	김건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161-7	
3	불로동 산 83	김건식	인천 서구 불노동 451	
4	마전동 540-4, -5	김덕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 29-98	
5	마전동 540-4, -5	김동자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22	
6	마전동 산 128-4	김왕기	인천 남구 도화동 109-1 성락상가-203(김백산)	
7	마전동 산 10-2	김용석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4-8	
8	마전동 산 200, 545-3, 546-1	김종립	인천 서구 마전동 545	
9	마전동 산 196-5, 540-4, -5	김진기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545	
10	마전동 540-4, -5	김창기	서울 강동구 성내동 291-12	
11	마전동 526-4	김한기	인천 서구 마전동 545	
12	마전동 산 128-4	김현영	인천 남구 주안동 1617 더월드스테인트아파트 106-2803	
13	불로동 산 57-2, 4, 290-4	노기복	서울 마포구 공덕동 43 삼성래미안공덕2차아파트 106-2004	
14	불로동 489-2	문병선	인천 서구 불노동 399	
15	불로동 480-1, -3, -5, -6	문희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144-4	
16	불로동 243-1	민경희	서울 중구 명동2가 29	
17	불로동 497-2	박근영	부천시 부내면 하리 402	
18	불로동 576-17	박상주	인천 서구 마전동 43블럭2,3롯데대원레스피아2차아파트 503-1803	
19	마전동 285-12	박수길	인천 연수구 청학동 525-9	
20	불로동 596-3	박순기	인천 부평구 부평동 798-26	
21	마전동 산 3	방석중	대전 서구 내동 28-4 신성아파트 2동 506호	
22	마전동 산 128-4	심상원	충남 아산시 온촌동 230-1	
23	불로동 산 107-1	암춘연	경성부 연희정 122	
24	불로동 산 88-1, 539-1, -3	원명선	경기 김포시 결포동 산8	
25	불로동 산 123-35, 622-7, 10, -28, -38, -49, -58, -59	유원석	인천 부평구 산곡동 293 우성아파트 110-802	
26	불로동 247-44	윤태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07 현대아파트 106-803	
27	마전동 산 120-7	이강문	인천 부평구 갈산동 113	
28	마전동 산 120-7	이강배	인천 부평구 갈산동 66	
29	불로동 산 115-1	이기성	서울 강북구 수유동 508-11	
30	마전동 541	이동수	인천 서구 백석동 172	
31	불로동 산 56-6	이만길	서울 강서구 방화동 620-30	
32	마전동 산 3	이송훈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8-3 라일락마을 2330-2202	
33	마전동 414-18	이승팔	인천 남구 송의동 190-47	
34	불로동 산 123-29	이철수	인천 계양구 병방동 136-3 대도빌라 1-302	
35	불로동 204-4	이태영	서울 강서구 방화동 866 창성넥스빌아파트-701	
36	불로동 207-2	이희영	인천 서구 불노동 산205-1	
37	불로동 649-3	임경연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542	
38	불로동 산 148, 649-3, -4	임광연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542	
39	불로동 산 148, 649-3, -4	임도연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581	
40	불로동 산 148, 649-3, -4	임병덕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541	
41	불로동 산 148, 649-3, -4	임병학	경기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370	
42	불로동 산 148, 649-3, -4	임희연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515	
43	마전동 3-1	장경민	인천 서구 마전동 151	

연번	물건지	이름	발송주소	비고
44	불로동 산 88-1, 539-1, -3	장연득	경기 김포시 감정동 674 신화아파트 107-802	
45	불로동 산 82-1, -2	전희분	서울 광진구 광장동 322-10	
46	불로동 산 123-29	조보연	인천 남동구 간석동 893-1 우성아파트 5-1406	
47	불로동 489-2	조상래	인천 서구 불노동 442	
48	마전동 540-4, -5	조임규	인천 서구 마전동 545	
49	불로동 641-4	조재석	서울 은평구 불광동 290-73 1층	
50	불로동 599, -2	천선우	인천 서구 불노동 산121-1	
51	불로동 306-15, -16, -40	최문정	경기 광명시 하안동 296 고층주공아파트 605-1512	
52	불로동 295-1	최연희	대전 동구 용전동 145-23	
53	마전동 산 128-4	최정근	인천 동구 송림동 8-661 누리아파트 -609	
54	마전동 산 197-6	한재수	인천 동구 송현동 100	
55	마전동 산 128-4	허영식	인천 연수구 청학동 530-15 세진빌라 B-301	
56	불로동 247-4	홍순각	인천 서구 불노동 248	
57	마전동 362-2	홍재윤	인천 서구 마전동 427	
58	불로동 산123-29	황경아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번지 수인상가 이에스피코리아	
59	마전동 527	강종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1184 삼성아파트 101-308	
60	불로동 424-4	김덕조	인천 서구 불노동 175-1 연진아파트 103-203	
61	마전동 518-4	김명옥	인천 서구 오류동 3(검단종합제철내)	
62	마전동 518-4	김태영	인천 계양구 작전동 79 한국아파트 101-607	
63	불로동 산 59-2	문병익	인천 서구 불노동 405	
64	불로동 557-2	문형준	인천 서구 불노리 392	
65	마전동 산 10-2	엄상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84-10	
66	마전동 414-18	이기수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3번지 연수주공1차아파트 106동 710호	
67	마전동 518-4	이용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30-18	
68	불로동 534	이흥지	경기 김포군 마산면 갈산리 2통 2호	
69	마전동 산 115	임주성	고양군 연희면 노고산리 99	
70	마전동 산 119-1, -15, 267-2, -3	임창영	서울 마포구 신정동 318-10 삼성쉐르빌-1 에이동 2303호	
71	마전동 414-18	장석달	인천 남구 송의동 84-1 송의시영아파트 가-410	
72	마전동 산 10-2	장화자	인천 남구 도화동 83-29 성빈빌라 1동 203호	
73	마전동 414-18	정병현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1-1306	
74	불로동 산 27-2	정원성	경기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산27-2	
75	마전동 산 119-1, 267-3	주식회사수인건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37	
76	불로동 596-3	천선우	인천 서구 불노동 산121-1	
77	마전동 414-18	합명회사홍성성호신용금고	인천 중구 신흥동 2가 16-22	
78	불로동 424-4	헝텐코리아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아이티타워 12층	

연번	물건지	이름	소재지	비고
1	불로동 534	소유자미상1	인천 서구 불노동 534	
2	불로동 557-2	소유자미상2	인천 서구 불노동 557-2	
3	불로동 산27-2	소유자미상3	인천 서구 불노동 산27-2	
4	불로동 산59-2	소유자미상4	인천 서구 불노동 산59-2	
5	불동 산115	소유자미상5	인천 서구 불노동 산115	